



「외부강의등의 수행 시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 시행 안내

☞ 우리 부 직원들의 외부강의등 수행시 ①준수사항, ②정기 실태점검, ③위반사항 조치기준 등 통일된 지침을 마련·시행('19.2.15부터 시행)

1 준수사항

가 사전신고

○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함

※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출장신청서에 신고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신고 대체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신고대상임
- ※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나 신고제외

○ ①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기관, 지자체인 경우**, ②**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제외**

※ (겸직허가 대상) ①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 ②대가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신고대상)

다 신고방법

〈다우리〉 → 〈업무마당〉 →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전신고

라 사례금

- (사례금 상한액) 직급별 구분 없이 1시간당 (기고 1건당)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 (초과사례금 신고·반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즉시 반환

마 기타 준수사항

- (월간 횟수) 월 4회 이상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무 관리)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출장신청·승인**을 받아야 함
 - 직무관련성 없는 외부강의(신고대상 아님)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여야 함
- (출장 여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을 위한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2 정기 실태점검

○ **매년 1회 6.30.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외부강의등 신고 실태에 대해 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별 자체 점검 실시 예정

※ '18년 본부 직원 대상 「외부강의등 실태점검」 결과, 총 281명이 수행한 외부강의 1,000건 중, 미신고·신고기한 초과 등 330건(33%) 위반 확인

3 위반사항 조치기준

○ 위반 유형과 경중 등에 따라 [징계-경고-주의-주의촉구] 등 조치

※ '19.2.15 이후부터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안내

☞ 공무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18.12.24 시행)

1 갑질행위 금지

※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

가 갑질의 개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산하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금지되는 갑질 행위

금지유형	금 지 행 위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① 직무와 관련 없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소속기관·산하기관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등 금지

※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항)

구분	금 지 행 위
1호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호	▶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항,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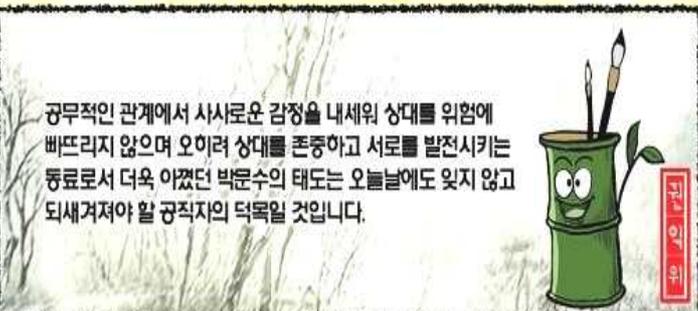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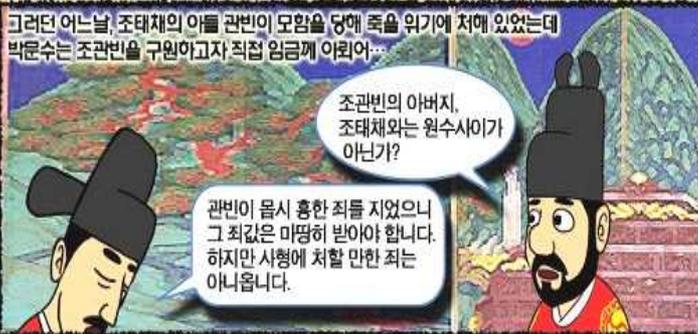


역사속 청렴 이야기

원수라도 공과 사는 다르다

-박문수-

박문수는 일찍이 신임사와 때, 이우당 조태채와 반대당이 되었고, 당론이 조금 안정되자 영조는 탕평론을 만들어 조화하게 하였지만 여전히 박문수와 조태채는 원수사이었다.



청렴 명언

子曰(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道千乘之國(도천승지국)

말 네 마리가 끄는 전차 천대를 가진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敬事而信(경사이신)

일을 정성껏 처리하고, 백성들에게 신용이 있으며

節用而愛人(절용이애인)

비용을 절약하고 인재를 아끼며

使民以時(사민이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킴에 있어서는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해야 한다.

<출처: 논어 「學而(학이)편」>

해석

오늘날 진정한 리더는 지위로 강압하는 것이 아닌, 부하 직원이 믿고 따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고, 비용을 아끼고 부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부하 직원의 능력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可以取(가이취)며 可以無取(가이무취)에 取(취)면 傷廉(상염)이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可以與(가이여)며 可以無與(가이무여)에 與(여)면 傷惠(상혜)오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켜며

可以死(가이사)며 可以無死(가이무사)에 死(사)면 傷勇(상용)이라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출처: 맹자 「離婁(이루)편」>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청탁금지법 위반



2019년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안내

청렴연수원의 월별 교육신청 안내공문이 접수되면, 본부 각과와 소속기관에 안내 예정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일수	교육일정
청렴리더십 과정	고위 공직자	매회 80명	1일	1기: 3.26(화) 2기: 9.24(화) 3기: 10.23(수)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공직자	매회 70명	4일	1기: 3.19(화) ~ 3.22(금) 2기: 5.21(화) ~ 5.24(금) 3기: 6.11(화) ~ 6.14(금) 4기: 7.23(화) ~ 7.26(금) 5기: 9.17(화) ~ 9.20(금) 6기: 10.15(화) ~ 10.18(금) 7기: 11.12(화) ~ 11.15(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기본과정 수료자	매회 40명	4일	1기: 4.16(화) ~ 4.19(금) 2기: 6.25(화) ~ 6.28(금) 3기: 8.20(화) ~ 8.23(금) 4기: 10.29(화) ~ 11. 1(금) 5기: 11.26(화) ~ 11.29(금)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월별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금 각 10만원 지급

2019. 1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서울관악	서울관악고용센터	주무관	이진영
상담센터	전화상담과	주무관	이은주
서울관악	서울관악고용센터	주무관	문혁기
통영	거제고용센터	주무관	진수연
통영	거제고용센터	전임상담원	김장미

2019. 2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서울관악	서울관악고용센터	전임상담원	김신연
평택	근로개선지도1과	민간조정관	조진수
통영	거제고용센터	주무관	진수연
경기지노위	심판2과	주무관	정택진
통영	거제고용센터	전임상담원	김장미